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26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이춘석 · 윤준병 · 김남희
이연희 · 정일영 · 양문석
문진석 · 서미화 · 임호선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정부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④ (생략) <u><신 설></u> <u>⑤</u> (생 략)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u> 정부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